

한국어의 근대화 연구 서설¹

— 「언문」에서 「국문」으로 —

고영진

1. 들어가는 말

1.1 이 글은, 갑오개혁을 전후하여 「언문」이 「국문」의 지위를 차지함으로써, 한국의 언어 생활에서 근대적인 계기를 마련해 나가는 과정을 추적해 보고자 하는 의도에서 씌어졌다. 이연숙[イ・ヨンスク](1987:81~82)이 적절히 지적하고 있듯이, “언어사에 있어서의 근대란, 종래의 이른바 「내적」 언어학, 혹은 「진공 속에서의」(in a vacuum - J. Vachek을 참조) 언어학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탄생한, 1960년대 이후의 사회언어학의 중요한 테마의 하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도대체 언어에서의 근대화란 무엇인가를 먼저 알아 볼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보통 ‘입말에 기초한 글말의 창출(=규범화)과 그 도달점으로서의 민족어(국민어)의 형성 과정’(三ツ井 2002:9)으로 정의된다. 부연하자면, “근대 이전의 언어 상황인 입말과 글말의 분리 상황, 가정에서의 일상 생활의 언어와 공적 언어(사법, 교육, 행정)의 분리 상황(diglossia)을 해소하고, 근대를 지향하는 국가의 언어를 「국어」로 하여 다양한 영역에서 근대화의 매개로서의 기능을 담당하는 언어의 탄생을 의미”(邢鎭義 2006:89~90)한다고 정리할 수 있다.

1.2 한국어의 근대화 문제는 그동안 소위 순수언어학 분야에서는 거의 주목을 받지 못한 테마이다. 이른바 「개화기」의 언어와 문자를 다룬 글들은 적지 않게 있으나, 그 대부분은 당시의 언어 상황을 「기술」하는 데에만 머무르고 있고, 언어적 근대 혹은 한국어의 근대화라는 측면에서 접근한 업적은 극소수이다. 필자가 알기로는, 언어적 근대라는 개념을 최초로 한국어

의 연구에 적용한 것은 이연숙[イ・ヨンスク](1987)이 아닌가 한다. 그리고 Ferguson(1959/1964)에 의하여 제안된 다이글로시아 개념을 이용하여 한국의 언어적 근대를 설명하려는 시도 또한 이연숙[イ・ヨンスク](1987, 2001)이 처음이라고 봐도 좋을 것이다. “퍼거슨은 정칙 아라비아어와 구어 아라비아어, 고전 그리스어와 민중 그리스어 등이 언어의 하이ера키를 만들고 있는 상태를 「다이글로시아」라고 명명”했는데, “고위의 언어 변종은 성스러운 텍스트의 전통에 의하여 뒷받침되어 글말에서는 고도로 지적인 대상을 논의할 때에만 사용되는 데에 비해, 하위 변종은 일상적인 입말로서밖에 사용되지 않”으며, “이 두 변종 사이에는 엄밀한 역할 분담이 이루어진다”(イ・ヨンスク 2001:180). 그런데 한문과 조선어의 관계가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는 것이 이연숙[イ・ヨンスク](2001:180)의 견해이다. 우리는 이러한 견지에서 한국어의 근대화를 논의하고자 한다.

2. 갑오개혁 전후의 「국문」사용의 확대

2.1 봉건적 조선 정부에서 처음으로 막연하게나마 「국문」에 대하여 눈을 뜨기 시작한 것은, 아마도 외국과의 근대적인 최초의 조약이라 할 1876년의 병자수호조규 때부터로 판단된다. 이 때의 조약과 관련한 다음의 대목을 우선 보기로 한다.

(1) 가. 제3관 일본은 그 국문을 쓰고 조선은 진문(眞文)을 쓴다.²

나. 제3관 이후 양국 간에 오가는 공문은, 일본은 그 국문을 쓰되 지금부터 10년 동안은 한문으로 번역한 것 1본(本)을 별도로 구비한다. 조선은 진문을 쓴다.³

(1)에 보이는 한일 양국의 왕복 공문을 무엇으로 쓸 것인가는 그 무렵의 조선 정부에 있어서 초미의 관심사였을 것이다. 공문서라면 「진문」으로 쓰는 것을 너무나 당연시해 왔던 당시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문제였을 것이기 때문이다. 일본측이 제시한 “일본은 그 국문을 쓰고 조선은 진문을 쓴다”는 조항도 조선 정부로서는 당혹스러웠을 것이다. 이는 (1가)와 같은 일본측의 제안에 대하여, 그 때 협상 대표로 나섰던 신현의 “조선 사람은 일본문을 읽

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만일 일본문을 단송(單送)한다면, 곧 사무의 지장이 생길 것이다. 한문을 첨부해 주기 바란다”⁴는 언급에서 확인된다. 이 문제의 당부를 이 자리에서 논할 생각은 없다. 다만, 이러한 조약의 체결로 인하여, 「진서」 혹은 「진문」이라는 인식에 흔들림이 있었으리라는 점과 함께, 일본측의 것이긴 하나 드디어 「국문」에 대한 생각이 희미하게나마 싹이 텄으리라는 데에만 주목하기로 한다.⁵

그러나 「국문」에 대한 본격적인 인식은 역시 갑오개혁 무렵부터라고 보는 편이 옳을 것이다. 비록 외세에 의한 것이라는 평가는 있을망정, 갑오개혁의 일환으로 여러 가지 정책이 시행됨으로써, 한글은 비로소 「언문」에서 「국문」으로 수직상승을 하였기 때문이다. 이것은 제도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할지 모르나, 어떠한 현상이든 그것이 제도화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이미 물줄기의 큰 흐름이 바뀌었음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점검해 볼 여지는 충분하다. 따라서 이 글에서 필자는 갑오개혁을 시발로 하여 정신없이 전개되었던 언어정책과 관련한 제반 문제들을 검토해 보려고 한다.

2.2 그 가운데, 1894년 6월 28일의 관제 개혁을 우리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아도 좋을 것이다. 이 관제 개혁으로 「학무아문」이 신설되는데, “學務衙門管理國內教育學務等政”⁶에서 보는 것처럼, 이 기관의 일은 국내 교육과 학무 전반이었다. 학무아문의 산하에는 「전문학무국, 보통학무국, 편집국」 등을 두었는데, 그 중 편집국에 관해서는 “編輯局掌國文綴字各國文繙譯及教課書編輯等事”(『관보』 1894년 6월 28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편집국의 임무는 ‘국문 철자법과 국문으로의 번역 및 교과서 편집’을 관장하는 것이었다. 이로써 언문은 비로소 「국문」으로 불리기 시작한다(이응호 1975:104).

학무아문은 1895년 3월 25일에 반포된 「칙령 제46호」에 따라 「학부」로 개편이 되는데, 이 칙령의 제7조에서 “編輯局에서는 教科圖書의 編輯 繙譯及 檢定에 關한 事項”⁷을 맡는 것으로 다시 확인되었다. 이와 함께 비슷한 무렵에 공포된 (2)의 「외부분과규정(外部分課規程)」(『관보』 15호, 1895년 4월 16일) 제4조도 주목할 가치가 있다.

(2) 繙譯課에서는 左開 各 事務를 掌함

一 諸外國文書의 國語 翻譯에 關호는 事項

二 國語 文書의 外國語 翻譯에 關호는 事項

(2)에서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국어」라는 말의 등장인데, 이 단어는 보기에 따라서는 national language로 해석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것은, 좀더 검토가 필요한 문제이긴 하나, 이 시기에 「국문」과 함께 「국어」라는 말이 쓰이기 시작했음을 보여 주는 예의 하나로 간주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⁸

2.2.1 1894년 6월의 관제 개혁에 이어서 발표된 언어정책과 관련한 항목들은 크게, 공문서의 작성에 관한 것, 각종 채용 시험에 관한 것, 그리고 교육에 관한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 가운데 우선 공문서의 작성에 관한 것을 보기로 한다.

(3) 凡國內外公私文字遇有外國國名地名人名之當用歐文者俱以國文繙釋施行事

(『고종실록』 32권, 1894년 7월 8일)

(3)은 “일체 국내외 공적인 문서와 사적인 문서에 외국의 국명, 지명, 인명이 구라과 글로 쓰여 있으면 모두 국문으로 번역해서 시행한다”(『고종실록』 32권, 1894년 7월 8일)는 것이다. 그러나 이 규정은 사실상 유명무실했던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3)이 공포된 지 약 1년 뒤인 1895년 6월에 학부 편집국에서 간행한 『소학만국지지(小學萬國地誌)』⁹에는, ‘세네갈, 간비아, 보수포라수’ 등 「국문」으로 적은 예들도 적지 않게 있으나, ‘高加索, 聖彼得堡府, 壤地利, 那以亞加拉大瀑布’ 등 「국문」으로 써도 큰 문제가 없었을 터인 외국의 국명과 지명을 대부분 한자로 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4) 法律勅令總以國文爲本漢文附譯或混用國漢文(『관보』 1894년 11월 22일)

저 유명한 「칙령 제1호 공문식(公文式)」 제14조의 “법률과 칙령은 국문으로 써 본을 삼고, 한문역을 첨부하며 혹은 국한문을 혼용한다”라는 부분이다. 그러나 이 규정, 특히 ‘국문으로 써 본을 삼는다’는 것은, 선언적인 것에 불과

했을 뿐, 실제로는 거의 지켜지지 않았다. 우선 정부에서부터 이 칙령을 지키지 않았던 것이다. 「국문」을 공문서에 사용하기 위한 제반 조건이 전혀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처음부터 지켜질 수가 없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칙령 제86호 공문식」 제9조의 “法律 命書은 다 國文으로써 本을 삼고 漢譯을 附하며 或 國漢文을 混用함”(『관보』 35호, 1895년 5월 11일)과 같은, 국한문을 혼용한 것이 사용되게 되는데, 실제로 공식 문서에 「국문」이 사용된 최초의 예는, 이보다 조금 앞선, 1894년 12월 11일에 칙령으로 공포된 「巡檢의 懲罰하는 例」이다.¹⁰ 그러나 이것은, 제1조의 “巡檢職務上的 遇失은 警務使가 懲罰하는 法을 行함이라”(『관보』 1894년 12월 11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순「국문」이 아닌 국한문이었다.

그런데 이 칙령이 반포된 바로 다음날인 1894년 12월 12일의 「大君主展謁宗廟誓告文」(「국문」으로는 「대군주게서 종묘에 전알하시고 빙서하시고 하신 글월」, 국한문으로는 「大君主게서 宗廟에 展謁하시고 誓告하신 文」이라고 되어 있다)은, 각각 한문체, 순국문체, 국한문혼용체의 세 종류가 있는 바, 그 순서도 이와 같다¹¹는 점에서 주목된다. 게다가 이것은, 정식으로 왕이 종묘에 고하는 문서임에도 불구하고, 순국문체가 한문체에 이어서 당당히 그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하고도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다. 그리고 그 이튿날인 12월 13일에 칙령으로 반포된 윤음도 한문체, 국한문혼용체, 순국문체의 세 가지로 발표되었다.¹²

2.2.2 다음으로 각종 채용 시험에 관한 것을 보기로 하는데, 그에 앞서 우선 살펴 보아야 하는 것은 1894년 7월 12일에 제정된 「선거조례(選舉條例)」이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과거제가 폐지되었기 때문이다. 이 선거조례는 「군국기무처」가 설치되어 관제 개혁이 이루어진 직후에 나오게 되는데, 군국기무처에서는 먼저 다음과 같은 의안(議案)을 고종에게 1894년 7월 3일에 올린다(정구선 1993:66).

- (5) 과문(科文)으로 선비를 뽑는 것은 조정에서 정해진 제도이지만 형식적인 글로 실물에 밝은 인재를 등용하기는 어려우므로 과거제도를 변통하도록 품주하여 재가를 받은 후에 별도로 선거조례를 정한다. (『고종실록』 32권, 1894년 7월 3

일)

이 의안은 제출되고 나서 며칠 후인 7월 12일에 고종의 재가를 받음으로써 과거 제도는 정식으로 폐지가 되었고, 그에 따라 새로이 제정된 것이 선거조례이다(정구선 1993:66~67). 선거조례에는 “예비 선발된 사람의 추천서에는 그의 재능이 어느 국(局), 어느 과(課)에 알맞은가를 밝히고 전고국(銓考局)을 거쳐 보통시험에 합격하기를 기다려 다시 특별시험을 본 다음 국(局)을 나누고 각 부(府), 아문(衙門)을 불러 임용한다”(『고종실록』 32권, 1894년 7월 12일)고 규정되었다. 이와 같이 하여 시행되기에 이른 보통시험의 과목은, 1894년 7월 12일에 제정된 「전고국조례」에서 “국문, 한문, 글자쓰기(寫字), 산술, 국내정사, 외국사정, 국내사정, 외무관계”(『고종실록』 32권, 1894년 7월 12일) 등으로 구체화되었다.

여기서 우리는, 「국문」이 맨 앞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과 더불어, 전통적으로 과거 시험의 대상이었던 유학이 시험 과목에 들어 있지 않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주지하는 바이지만 과거 시험(특히 문과)에는 “중국의 경서(사서오경)과 사서(史書), 그리고 사장(詞章)이 부과되었”으므로, “유학에 대한 수업이 없이는 관리로서 출세할 수 없었던 것은 당연한 추세”(한우근 1970:254)였다. 그런데 이제 전통적인 유교 사상에 자신의 삶의 가치를 두고 있던 유생들이 관리의 길로 진출하는 통로였던 과거 시험이 폐지됨으로써, 새로운 제도에 적응하지 않는 한, 그들은 갈 곳이 없어졌다. 더구나 과거제는 “봉건적 토지 소유와 함께 봉건 체제의 2대 지주였다”(박종근 1985:262)는 점을 감안할 때에, 새로운 관리등용 제도가 정착이 된다면, 그것은 지배 권력의 교체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기도 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국문」은 다시 법관 양성을 위한 제도에서도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데, 다음은 「법관양성소규정」 중 이와 관련이 있는 부분만 따 온 것이다.

(6) 칙령 제49호 법관양성소규정 제4조¹³

…… 入學試驗 科目이 左와 如함

一 漢文 作文

— 國文 作文

— 朝鮮歷史 及 地誌大要

이 내용은 1895년 4월 10일에 발행된 『관보』 제9호의 「광고」란에 “法部 養成所의 應募 生徒 試取를 本月 十二日로 至十五日이온되 試取호기는 國文 과 漢文과 歷史와 作文과 地誌 五條로 試驗함”이 실려 있는 데에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¹⁴

2.2.3 앞에서 본 과거제의 폐지는, 단순히 관리등용 제도의 변혁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그것은 “유교를 「교학」의 지위에서 끌어내리게 되었고 또 필연적으로 학교 교육의 중심으로부터 제외되게 만들었”(박종근 1985:262)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것이 근대 교육인데, 그 시작은 1895년 2월에 내려진 고종의 「교육조칙」이었다.

「교육조칙」이 나오고 나서, 새로운 교육 제도가 하나씩 만들어지게 되는 데, 먼저 1895년 3월에 「칙령 제46호」에 의해 「학부관제」가 제가·반포됨(『고종실록』 33권, 1895년 3월 25일)으로써 그것은 본격화한다. 이 학부관제에는, 학부의 조직 전반에 관한 것과 더불어, ‘공립학교 직원의 진퇴 신분’에 관한 사항, 교원의 검정에 관한 사항, 소학교 및 학령 아동의 취학에 관한 사항, 사범학교에 관한 사항, 중학교에 관한 사항, 외국어학교 전문학교 및 기예학교에 관한 사항’ 등을 학부의 어느 부서에서 담당할 것인지가 규정되어 있었다. 또한, 앞에서도 보았듯이, ‘교과서의 편집과 번역 및 검정’(제7조)에 관한 것도 이 칙령의 주요 내용 가운데 하나였다.

그리고 학부관제의 규정을 구체화할 필요성에서 제정된 것이 「칙령 제79호 한성사범학교관제」(1895년 4월 16일)(『관보』 제17호, 1895년 4월 19일)와 「칙령 제145호 소학교령」(1895년 7월 19일)(『관보』 119호, 1895년 7월 22일) 등이었다. 또한 이들 칙령에 대한 각론도 당연히 필요하게 되는 데, 그 한 예로 「한성사범학교규칙 병 부속소학교규칙(漢城師範學校規則並附屬小學校規則)」(1895년 7월 23일의 「학부령 제1호」)(『관보』 제121호, 1895년 7월 24일)을 들 수 있다. 다음에 보이는 것은, 「한성사범학교규칙 병 부속소학교규칙」 가운데에 「국문」과 관련된 부분만을 뽑은 것이다.

(7) 학부령 제1호 한성사범학교규칙 병 부속소학교규칙

第11條 漢城師範學校의 本科에 課할 學科目的의 程度는 左갓치 定함

…… 國文

講讀 ……

漢文

第12條 漢城師範學校 速成科學員의 課할 學科目的의 程度는 左갓치 定함

…… 國文

講讀 ……

漢文

第14條 入學을 願할 者는 左의 資格이 具할 者로 入學試驗에 及第할 要함

……入學試驗은 國文 漢文과 本國 歷史 地誌에 通할 者를 檢定함 ……

위에서 보는 것처럼, 사범학교의 경우, 본과나 속성과를 막론하고, 「국문」이 학과목의 하나로 들어가 있으며, 입학시험의 과목으로도 지정돼 있었다.

뿐만 아니라, 1895년 8월 9일에 공포된 「학부령 제2호 성균관경학과규칙(成均館經學科規則)」의 제2조에는 “成均館 經學科 學生의 課할 學科目的은 三經四書 及其 諺解 綱目 宋元明史并 本國史 作文으로 함”(『관보』 제135호, 1895년 8월 12일)이라고 명시함으로써, 드디어 「국문」은, 비록 「언해」라는 용어가 여전히 사용되고는 있으나, 유학의 본산이라 할 성균관의 정식 과목으로까지 진출한다.

이어서 1895년 8월 12일에는 「학부령 제3호」로 「소학교교칙대강(小學校敎則大綱)」(『관보』 138호, 1895년 8월 15일)이 제정되었는데, 그 가운데에서 「국문」의 교육과 관련이 있는 것을, 좀 길기는 하지만, 아래에 인용한다.

(8) 학부령 제3호 소학교교칙대강 제3조

讀書와 作文은 近으로 由할야 遠에 及할며 簡으로 由할야 繁에 就할 方法에 依하고 몬져 普通의 言語와 日常須知의 文字 文句 文法의 讀方과 意義를 知게 하고 適當한 言語와 字句를 用할야 正確히 思想을 表彰할 能을 養하고 兼할야 智德을 啓發함을 要旨로 함

尋常科에는 近易適切한 事物에 就하며 平易하게 談話하고 其 言語를 練習하는 國文의 讀法 書法 綴法을 知게 하고 次第로 國文의 短文과 近易한 漢文 交하는 文을 授하고 漸進하기를 從야 讀書 作文의 教授時間을 分別하니 讀書는 國文과 近易한 漢文 交하는 文으로 授하고 作文은 國文과 近易한 漢文 交하는 文과 日用書類等を 授함이 可함

高等科에는 讀書는 漢字 交文을 授하고 作文은 漢字 交文과 日用書類를 授함이 可함

讀書와 作文을 授하는 時에는 單語 短句 短文 等を 書取게 하고 或 改作야 國文 使用法과 語句의 用法에 熟하게 함이 可함

讀本의 文法은 平易케 해야 普通國文의 模範됨을 要하는 故로 兒童이 理會하기 易야 其 心情을 快活 純正케 함을 採함이 可하고 또 此 事項은 修身 地理 歷史 理科 其他 日用生活에 必要하고 教授에 趣味를 添함이 可함

作文 讀書와 其他 教科目에 授한 事項과 兒童의 日常 見聞한 事項과 及 處世에 必要한 事項을 記述호되 行文이 平易하고 旨趣가 明瞭케 함을 要함

言語는 他教科目的 教授에도 항상 注意야 練習케 함을 要함

위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소학교교칙대강」에서는 당시의 「국문」 교육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상당히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국문」 교육은 쉬운 데에서 어려운 데로 나아가야 하고, 한자와 섞어서 하며, 그 내용은 ‘독법, 서법, 철법(綴法), 서취(書取)’ 등은 물론,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일용서류’와 같은 실용적인 데에까지 미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간행된 당시의 교과서는 반드시 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었다. 예를 들어, “신교육 제도가 구체화되는 소학교령 시대에 때를 맞추어 간행된 「최초의 신교육용 국어 교과서」”(전용호 2005:244)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국민소학독본(國民小學讀本)』¹⁵의 제1과 「대조선국(大朝鮮國)」의 전문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 (9) 우리 大朝鮮은 亞細亞洲 中의 一王國이라 其形은 西北으로서 東南에 出은 半島國이니 氣候가 西北은 寒氣 甚하나 東南은 溫和하며 土地는 肥沃하고 物産이 饒足하니라

世界 萬國中에 獨立國이 許多호니 우리 大朝鮮國도 其中의 一國이라 檀箕衛와 三韓과 羅麗濟와 高麗를 지난 古國이오 太祖大王이 開國호신 後 五百有餘年에 王統이 連續호 나라이라 吾等은 如此호 나라에 生호야 今日에 와서 世界 萬國과 修好通商호야 富強을 닦토는 筈에 當호얏시니 우리 王國에 사는 臣民의 最急務는 다만 學業을 힘쓰기에 잇느니라 또호 나라의 富強이며 貧弱은 一國 臣民의 學業에 關係호니 汝等 學徒는 泛然이 알지 말며 學業은 다만 讀書와 習字와 算數等 課業을 修홀 뿐 아니오 平常 父母와 教師와 長上의 教訓을 조차 言行을 바르게 호미 最要호니라

위에서 보는 것처럼, 『국민소학독본』은, 그 이름과는 달리, 소학교용이라고 하기에는 부적절한 것이었다. 무척 어려운 한자어들은 차치하더라도, 역사 및 지리에 관한 사전 지식이 없이는 도저히 읽어 낼 수가 없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다. 게다가 당시에 새로이 등장했을 것임에 틀림이 없는 ‘아세아주, 세계 만국, 독립국, 수호통상’과 같은 어휘의 사용도 주저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의 쉽고 어려움을 떠나서, 『국민소학독본』을 통하여 「국민」 교육을 본격화하려 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는 적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것은 예컨대 다음과 같은 구절들을 보면 더욱 명확해진다.

- (10) 우리나라 世宗大王께서 萬古의 大聖人이시라 人民의 農事를 爲호샤 農事集說이라 호는 冊을 지어 頒布호시고 刑罰의 慘酷호를 惻怛히 녀기샤 笞背法을 除호시고 倫紀의 綱領을 定호샤 三綱行實이라 호는 冊을 頒行호시고 龍飛御天歌를 撰호샤 祖宗의 德을 贊揚호시고 또 雅樂을 定호시며 또 萬世에 欽仰호는 者는 世宗大王이 卽아스되 外國에는 다 其國文字 | 有호되 我國에는 無호다 호샤 訓民正音을 지으시고 冊板 삭이는 法이 不便호다 호샤 活字를 鑄호시니 此는 다 大聖人의 開物成務호시는 文明호 德이라 支那의 堯舜禹湯이 아모리 聖人이라 호는 我 世宗大王의 聖神호신 德을 엇지 當호리오 支那 古昔帝王에 비록 聖賢이 多호다 호야도 世宗大王께서 行호신 여러 가지 文明호신 德을 合호는 者 | 無호니라 是故로 我 世宗大王께서 堯舜禹湯씨 上에 大聖人이시니 汝等 學徒들은 我國에 이러호신 大聖人이 계오신 줄 알지어다 我 大君主 陛下께서 大聖人의 道德으로 大聖人의 王統을 繼承호시니 吾等은 大聖人의 人民이라 아모조록 愛國心으로

로 工夫를 잘하야 富強文明호는 化를 協贊하야 大聖人 自主獨立國의 活潑勤勉호는 自由良民이 되미 可호니라(『國民小學讀本』 제5과 世宗大王紀事 전문)

세종대왕이 아국에는 국문자가 없음을 안타까이 여겨 훈민정음을 지었다는 내용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과거 같았으면 상상도 하지 못했을 터인 요순 우탕보다 세종대왕이 더 대성인이라는 등의 발언이 거침없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 밖에 제3과의 「한양」이라든가, 수양제의 대군을 격파한 내용을 담고 있는 제22과의 「을지문덕」과 관련한 부분도 같은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기사들은 「소학교령」 제1조의 “小學校는 兒童 身體의 發達함에 鑒호야 國民教育의 基礎와 其 生活上 必要호는 普通 知識과 技能을 授호므로써 本旨로 肅” 및 제15조의 “小學校의 教科用書는 學部의 編輯호는 外에도 或 學部大臣의 檢定을 經호는 者를 用호” (『관보』 119호, 1895년 7월 22일)이라는 규정에 따라, 학부의 편집국이 직접 교과서의 편찬에 관여함으로써, 본격적인 「국민」 교육에 나섰음을 알려 준다는 점에서 그 의의는 무척 크다.

이와 함께, 「교육조직」 이후 학부에서 최초로 편찬한 교과서들이 『소학만국지』(1895년 6월)와 『국민소학독본』(1895년 梧秋) 및 『조선지』(1895년 菊秋)¹⁶ 등 지리와 「국어」 교과서였다는 것은 많은 점을 시사한다. 앞의 (9)에서 본 것처럼, 『국민소학독본』은 「대조선국」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으며, 『조선지』는 “朝鮮이 亞細亞洲 東端에 在호니 東南은 日本海를 面호고 西는 黃海를 臨호고 北은 鴨綠豆滿 二江이 遼東과 滿洲로더부러 接壤호야 露淸 二國에 隣이 되니……”라 하여 일단 조선의 「국경」에 대한 해설부터 시작하고 있는 것이다.¹⁷ 이것은, 「국경」이나 「국어」라는 개념이 근대 이후에 등장한 것이라는 점과 관련지어 생각할 때에만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서, 국민국가 형성을 위한 노력과 직결되는 부분이다.

2.2.4 위에서 살폈던 세 가지, 즉 언문이 국가의 공문서에서 「국문」의 지위를 차지했다는 사실, 과거제의 폐지와 더불어 국가가 시행하는 시험의 한 과목으로 「국문」이 포함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학교에서 「국문」을 가르침은 물론 그와 관련한 세부 항목과 더불어 「국문」으로 교과서까지도 편찬되었다는 사실은, 한국의 언어사상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물론 이러한 것들은

갑오개혁 때에 갑자기 등장했다기보다는 오랜 기간 누적된 것들이 이 시기에 이르러 제도 속으로 편입되었다고 보는 편이 더 타당할 것이다. 그럼에도 그것이 명문화되어 제도화되었다는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기존의 논의에서는 이 때 과거제가 폐지된 데에 대해서는 보통 한두 줄 언급하고 마는 경우가 많은데, 필자가 보기에 이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과거제가 폐지됨으로써, 그동안 과거를 통하여 권력을 독점해 왔던 양반 계급이 설 자리를 잃게 되었고, 그 결과 이제 더 이상 한문을 알고 있는 것 자체가 권력이 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로써 그동안 다이글로시아의 상층 부분을 담당해 오던 「진문」의 세계가 끝나고, 하층 부분을 담당해 오던 언문이 당당히 「국문」으로 서게 될 가능성이 생긴 것이다. 마치 유럽에서 라틴어가 무너지고 속어가 민족어의 지위를 차지해 나가는 과정과 대단히 흡사하다. 게다가 보통 권력의 교체는 언어의 교체도 동반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과거제의 폐지가 가져오는 효과는 상상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그러므로 과거제의 폐지는, 신분제를 실질적으로 타파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임과 동시에, 중세적 글말의 질서가 완전히 종언을 고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무리가 없다. 양반들이 「진문」의 폐지에 그렇게도 강경하게 반대했던 이유도 여기에서 찾을 수 있다.

2.2.5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국문」을 사용하기 위한 정부 차원에서의 사전 준비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그렇기 때문에 위의 정책들은 지키고 싶어도 정부에서 먼저 어길 수밖에 없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가령, 앞에서 보았던 「칙령 제1호 공문식」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관보에는 순한문·국한문 섞어 쓰기, 그리고, 맨 끝에다가 순한글로 된 것이 실려 있”(이응호 1975:118)는 형편이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1908년 2월 6일에 간행된 『관보』 3990호에는 “從來 公文書類에 使用하는 文字를 國漢文을 交用치 아니하고 或 純漢文으로 調製하며 吏讀를 混用함이 已違 規例이요 且 外國人으로 本國 官吏된 者가 或 其 國文을 專用하며 一般 解釋上에 疑誤할 慮가 有할뿐더러 規式에 違反되겠습기 左開 條件을 另定施行할 事로 閣議에 決定해야 內閣總理大臣이 各部에 照會를 發함”이라고 한 뒤에, 그 각론으로는 “一 各官廳의 公文書類는 一切히 國漢文을 交用하고 純漢文이나 吏

讀나 外國文字의 混用함을 不得함 — 外國官廳으로 接受한 公文에 關호야만 原本으로 正式 處辨을 經호되 譯本을 添付호야 存檔케 함”이라 하여, 정부 스스로가 제정한 규정을 깨뜨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었다.¹⁸

이러한 상황에서 「언문」이 「국문」이 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먼저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글말의 규범화였다. 우선 각 단어들의 철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확정되어야 하며, 문장의 작성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와 더불어 그 전범이 될 만한 것들도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또한 어휘적 측면에서는 개인 혹은 특정 지역에서만 쓰이는 것들이 아니라 전국적인 차원에서 공통성을 보장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규범화된 어휘집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들 세 차원을 우리는 「철자법」, 「문법」, 「사전」이라고 부른다.¹⁹ 문법은 그것이 없이는 합리적인 철자법을 만들어 낼 수 없다는 데에서도 그 중요성이 인정된다. 그리고 사전은, 지방에 따른 방언의 차이를 어휘의 차원에서 극복하고, 통일적인 어휘 규범을 확립하기 위하여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이다. 또한 이들 규범을 제정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체계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보통교육이 반드시 필요해진다. 게다가 당시에는 문맹 혹은 반문맹인 사람들도 적지 않았을 것이므로, 문맹을 퇴치하는 일 또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의 하나였다. 이와 함께 입말의 차원에서는 표준어를 확립하는 것도 빠뜨릴 수 없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에 어느 하나도 준비된 것이 없었던 데다가, 정부 차원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언어의 규범화와 관련된 제 문제는 민간 차원으로 넘어가지 않을 수 없었고,²⁰ 이것은 또한 새로운 논쟁의 씨앗이 된 것으로 판단된다.

3. 「국문」전용론과 한문폐지불가론

3.1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갑오개혁의 과정에서 언문은 일약 「국문」으로 발돋움을 했고, 「진문」은 과거제가 폐지되면서 여태까지 누려 오던 권위를 한꺼번에 잃게 될 위기에 처했다. 그런데 「국문」이 「국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사전 준비가 전혀 없었음은 이미 지적한 대로이다. 바로 이 지점이, 「국문」의 불완전함을 지적하면서, 「진문」을 폐지할 수 없다는 주장이

설 수 있는 곳이었다. 이 장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그 결론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진문」 곧 한문을 폐지할 수 없다는 주장의 완패로 끝났는데, 그것은 예정되어 있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진문」이야말로 중세적 언어(글말) 질서 그 자체였고, 이 시기에 중세는 이미 종말을 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은 한국어의 근대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다.²¹

3.2 널리 알려진 사실이지만, 이 무렵의 「국문전용」은 『독립신문』에서 시작되었고, 또 그에 대한 인식이 가장 명확하게 제시된 것도, 아래에 보이는 『독립신문』 창간호의 논설이다.

- (11) 각국에서는 사람들이 남녀 무론하고 본국 국문을 먼저 비화 능통후 후에야 외국 글을 비오는 법인듯 조선서는 조선 국문은 아니 비오드릭도 한문만 공부 하는 싸둑에 국문을 잘 아는 사람이 드물미라 조선 국문하고 한문하고 비교하여 보면 조선국문이 한문 보다 얼마가 나흔거시 무어시고하니 첫치는 비호기가 쉬흔이 도흔 글이요 들치는 이글이 조선글이니 조선 인민 들이 알아서 빅스를 한문되신 국문으로 써야 상하 귀천이 모도보고 알아보기가 쉬홀터이라 한문만 늘 써 버릇하고 국문은 폐홀 싸둑에 국문만 쓴 글을 조선 인민이 도로혀 잘 아려보 보지못하고 한문을 잘알아보니 그게 엇지 한심치 아니호리오(『독립신문』 제1권 제1호, 1896년 4월 7일)²²

위 논설에 따르면, (과거의)언문은 ‘한문보다 배우기가 쉬울 뿐만 아니라, 조선 사람들이 알아서 백사를 한문 대신 써야 하는’ “조선국문”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음에 비하여, “「진서」였던 한문은 「외국의 글」로 전락”(강명관 1985:202)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한문만 늘 써 버릇하고 국문은 폐한 까닭에 국문만을 쓴 글은 조선 인민이 도리어 알아 보지 못하고, 한문을 잘 알아 보니 그것은 참으로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렇게 된 이유는 “첫치는 말마티을 세이지 아니하고 그져 줄줄너려 쓰는 싸둑”이고, “또 그나마 국문을 자조 아니 쓰는고로 서틀어서 잘못봄”이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문 못 혼다고 그사람이 무식혼사람이 아니라 국문만 잘하고 다른 물정과 학문

이잇스면 그사람은 한문만하고 다른 물정과 학문이 업는 사람 보다 유식하고 높은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 법이라고 윗글은 주장한다.²³

결국 위의 논설은 ‘국문이 배우기 쉽다’(그러기 위해서는 띄어써야 하고, 자주 써야 한다)는 것 및 ‘국문만으로 물정과 학문을 할 수 있다’(강명관 1985:202)는 것, 다시 말해 한문없이 「국문」만으로 언어생활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러한 주장은 『독립신문』의 제2권 47호 및 48호에 연재된 류상호(주시경)의 「국문론」에서 더욱 상세히 펼쳐진다.

(12) 글즈라 흐는거슨 단지 말과 일을 표 흐즈는거시라 (중략) 말 흐는거슬 표로 모하 기록 흐여 낫는거시나 표로 모하 기록 흐여 노흔것슬 입으로 낫는거시나 말에마되와 토가 분명 하고 서로음이 썩긋흐야 이거시 참 글즈요 무슴 말은 무슴 표라고 그려 낫는거슨 그 표에 움직이는 토나 형용 흐는 토나 쏘 다른 여러 가지 토들이 없고 쏘 음이 말 흐는것과 ㄱ지 못 하니 이거슨 썩 그림이라고 일흠 흐야 울코 글즈라 흐는거슨 아쥬 아니 될 말이라 쏘 이 두 ㄱ지 글즈들 중에 비호기와 쓰기에 어렵고 쉬은거슬 비교 흐야 말 흐면 음을 초차 쓰게 몬드느 글즈는 즈모(중략)음에 분간 되는것몬 각각 표흐야 몬드려 노흐면 그 후에는 말을 흐는 음이 도라 가느되로 썩라 모하 쓰나니 이러 흠으로 즈연히 글즈 수가 적고 문리가 있어 비호기가 쉬으며 글즈가 멋시 못 되는 고로 획수를 적게 몬드려 쓰기도 쉬으니 이러케 글즈들을 몬드려 쓰는거슨 참 의스와 규모와 학문이 잇는 일이요 (『독립신문』 제2권 47호, 1897년 4월 22일)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시경에 의하면, 한자는 “무슴 표라고 그려 낫는 거”로 “썩 그림이라고 일흠 흐야 울코 글즈라 흐는거슨 아쥬 아니 될 말”이다. 또 한자는 “물건들의 일흠과 말 흐는것 마다 각각 표를 몬드려 흐즈 즈연히 표들이 몇 만기가 되고 쏘 몇 만기 표의 모양을 다 다르게 그리자 흐즈 즈연히 획수가 만아져서 이 몇 만ㄱ지 그림들을 다 비호자 흐면 몇 해 동안 익를 써야 흐”지만, “참 글즈”는 글자 수가 적고 문리가 있어서 배우기가 쉽다. 예컨대 “넛적 유럽 속에 잇든” “헤너쉬아 글즈”는 ‘자모음을 합하여 26자에 지나지 않지만 어떤 나라 말이든지 기록하지 못할 것이 없고 또 쓰기가 쉽기 때문에 지금 문명한 유럽의 여러 나라들과 아메리카의 여러 나라들이

이 글자로 저의 나라 말의 음을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조선의 글자는 “혜너 쉬아에서 모든 글즈 보다 더 유쇼 하고 규모가 잇”고 “격식과 문리가 더 잇서 빙호기가 더욱 쉬으니” “조선 글즈가 세계에 데일 조코 학문이 잇는 글즈”라는 논리가 성립한다. 그러므로 주시경에게는 「국문」이야말로 “참 글즈” 중의 “참 글즈”인 셈이다.²⁴

이에 따라 “어렵고 어려운 그 몸실 그림”을 가지고 ‘다른 일은 아무것도 못하고 다른 재주는 하나도 못 배우고 십여년을 허비하여 공부하고서도 성취 못 하는 사람이 반이 넘으며, 또 십여년을 허비하여 잘 공부하고 난 뒤에도 그 선비가 아는 것이 무엇이나’(『독립신문』 제2권 48호, 1897년 4월 24일)면서, 주시경은 혹독하게 한자와 한문을 비판한다. 다음은 그에 이어지는 발언이다.

(13) 이러 흙으로 빅성이 무식 하고 간난 흙을 인 해야 즈연히 나라가 어둡고 약 하지는지라 엇지 이것보다 더 큰 험와 폐가 잇시리요 (중략) 우리 나라 사름들이 종시 이것(한문-인용자)은 공부 하고 다른 새 스업을 빙호지 아니 흐거드면 우리 나라이 어둡고 약 흙을 벗지 못 하고 머지 아니 해야 즈기 죠상들의게 전 해야 밧아 내려 오는 전디와 가쟝과 즈기의 신클과 즈손들이 다 어느 나라 사름의 손에 드러가 밧이 될지 이지 못 흘 증거가 목하에 보이니 참 놀납고 잇 탄 흘곳이로다 엇지 죠심치 아니 흘 세리오 만일 우리로 하여금 그림 글즈를 공부 하는 대신의 정치 속에 의회원 공부나 다투 공부나 외무 공부나 지뎡 공부나 법률 공부나 수륙군 공부나 항해 공부나 위싱 상경제학 공부나 장식 공부나 장스 공부나 농스 공부나 쏘 기외의 각식 스업상공부들을 하면 엇지 십여년 동안에 이 여러 가지 공부 속에서 아모 사름이라도 쓸믄흔 즉업의 흘기지는 잘 졸업 흘터이니 그후에 각기 즈기의 즉분을 착실히 직혀 사름마다 부즈가 되고 학문이 널너지면 그제야 바야호로 우리 나라가 문명 부강 해야 질터이라(『독립신문』 제2권 48호, 1897년 4월 24일)

그렇기 때문에 배우기도 쉽고 쓰기도 쉬운 “큰 성인씩서 만든 글즈”를 가지고 “사름마다 절머를 세에 여가를 엇어 실상 스업에 유릭흔 학문을 익혀 각기 흘믄흔 즉업을 적혀서 우리 나라 독립에 기동과 주초가 되”며, “쏘우

리 나라의 부강흔 위엄과 문명흔 명예가 세계에 빛나게 흐는 거시 못당 흐” 게 되는 것이다(『독립신문』 제2권 48호, 1897년 4월 24일). 그리하여 지금 까지처럼 한문만 배우고 앉았다가는 나라가 망하는 데에까지 이를 수 있다는 경고를 주시경은 던졌고, 이를 피하고 부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배우기 쉽고 쓰기 쉬운 「국문」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 그의 결론이다.

그러나 「국문」을 「국문으로」 쓰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았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규범 문법과 철자법, 그리고 사전 편찬 등이 그것인데, 주시경은 이 모든 일에 관여를 했다. 후학들에게 큰 영향을 끼친 문법서의 저술은 물론이거니와, 독립신문사 안에 국문동식회를 조직하여 철자법의 확립에 힘을 썼으며(김민수 1986:250), 그것이 나중에는 그의 제자들이 중심이 되어 결성한 조선어학회의 「한글 맞춤법 통일안」(1933)으로 이어졌음은 우리가 잘 아는 사실이다. 그리고 사전 편찬에 대해서도, 그것의 필요성을 여러 번 강조하는 데²⁵에 그치지 않고, 최초의 「국어」사전이라 할 수 있는 『말모이』의 편찬에도 김두봉과 함께 주도적으로 참여했지만(이병근 2000:85), 애석하게도 그것의 완성은 보지 못하고 말았다.

3.3 다음으로 우리가 검토할 것은 「한문폐지불가론」이다.²⁶ 갑오개혁 이후 「언문」이 「국문」이 되었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한문이 「진문」의 자리를 내 놓고 외국어의 하나에 불과한 「한문」으로 전락했음을 의미한다는 것은 이미 말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기득권 세력의 반발이 적지 않았을 것임은 쉬이 추정할 수 있다.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자료로서, 이에 대한 최초의 문제 제기는 아마도 신기선에 의한 것이었던 듯하다. 이것은 『독립신문』 제1권 26호(1896년 6월 4일)의 「잡보」에 보이는 다음의 기사를 보면 알 수 있다.

- (14) 새로 흐 학부 대신 신기선씨가 상소 흐엿는디 머리 깎고 양복 낚는거슨 야만이 되는 시초요 국문을 쓰고 청국 글을 폐흐는거슨 울치 안코 외국 태양역을 쓰고 청국 황태가 주신 정삭을 폐 흐는거슨 도리가 아니요 정부에 규칙이 잇서 닉각 대신이 국스틀 의론 흐여 일을 작정 흐는거슨 닉군의 권리를 썩앗는거시오 빅성을 권리를 주는거시니 이거슨 모도 이왕 정부에 잇던 역적들이 흐 일이라 학부 대신을 흐엿스되 횡공 흐기가 어려운거시 정부 학교 학도들이 머리를 깎고 양복

을 넘은 식둡이요 국문을 쓰는 일은 사뭇을 변 호여 증승을 만든 거시오 종수를 망 호고 청국 글을 폐 호는 일이니 이런 세에 벼슬 호기가 어려오니 가라 주 시기를 보란다고 말씀 호엿더라

위 기사의 배경에 대해서는 강명관(1985:212)이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동도서기론적 사고를 고수하고 있던 그(신기선-인용자)는 학부대신에 임명되자 사양하는 소를 올려 정부의 문체개혁에 불만을 표시하였고 이 소의 내용이 『독립신문』에 포착”된 것이 위 기사가 나오게 된 배경이라고 한다. 신기선이 이와 관련하여 올렸다는 상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5) 배운다는 이 한 글자는 신이 평생 저으기 사모하였으나 아직 성취하지 못한 것입니다. 진실로 유교를 나라에 흥하게 하고 문예를 팔성(八城)에 장려시키고자 하는 것이 어찌 진실로 평소부터 원하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생각하건대 오늘날의 학문은 예전의 학문과 다르며 의리쌍행지교(義理雙行之教)와 국한병용지문(國漢並用之文)은 신이 배운 바가 아닙니다.²⁷

그런데 그는 이 소(疏)가 각하되자, 4월에 다시 “국한문을 같이 쓰는 것은 문자를 파괴하고 경전(經傳)은 폐하려는 것이며, 태양력을 새로 시행하려는 것은 외국의 습속을 따라서 정삭(正朔)을 혁파하려는 것”²⁸이라는 소를 올렸다. 강명관(1985:213)에 따르면, “신기선의 반발 논리의 골자는 한문이 폐지되면 따라서 유가적 윤리가 붕괴된다는 것”이므로, “신기선의 논리는 「선비를 국문반절(國文半切)로 가르치는 것은 사람을 짐승으로 만드는 것」이라는 데로 귀착될 수밖에 없다. 즉, 신기선은 「진문」의 폐지가 중세적 글말 질서의 붕괴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왜 『독립신문』에 위와 같은 기사를 실지 않을 수 없었는가를 이해할 수 있다. 곧, 『독립신문』측에서도 신기선의 주장이 봉건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기득권 세력의 저항이라는 것을 간파했고, 또 그럼으로써 그것을 논파하지 않고서는 「국문전용」은커녕, 한문의 폐지도 불가능하리라는 것을 눈치채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독립신문』에서는 이 신기선의 상소 내용을 “학부 대신 신기선씨의 상소를 들으니 머리 깎고 양복 낚는거시

기화흔 사름이 야만이 되는 시초요 조선 세조 대왕이문드신 조선글 쓰는거슨 사름을 변 혀여 즘승을 문든거시라 혀였고 태양역을 쓰지 말고 청국 정삭을 밧들자고 혀였고 이런 일을 모도 혀기를 이왕 정부에 이턴 역적들이 혼 일이라고 혀였”다고 일단 정리한다. 이어서 “우리가 다른 말은 다 상관 아니 혀되 이 몇가지 일에 말흔거슨 불가불 말을 혀여야 나라히 독립국이 될터이요 선왕의 혀신 일이 붉아 질” 것이라면서,²⁹ 다음과 같이 신기선의 상소를 격렬하게 비판한다.

- (16) 국문이란 거슨 조선 글이요 세조 대왕씨서 문드신거시라 한문 보다 빅빅가 낮고 편리 혼죽 내 나라에 조흔게 잇스면 그 거슬 쓰는거시 올치 이 쓰는 일은 사름을 즘승 문드느것과 갓다고 혀였스니 선왕의 락첩도 아니요 조선 사름을 위 혀는것도 아니라 청국 정삭을 도로 밧들자 혀였스니 청국 황테를 그러케 섬기고 스포 쓴시 잇스면 청국으로 가서 청국 신하 되느거시 맛당 혀고 조선 대군주 폐하의 신하 될료리논 업슬듯 혀더라 정부에 규칙이 잇서 빅성을 즘유케 혼다느거슬 군권을 썩앗는다 혀였스니 그거슨 충심이 아니라 조선 전국 인민을 천디 혀느거시요 이런 일을 모도 이왕 정부 역적들이 혀였다고 혀였스니 우리가 잘 못 알지 안 혀였스면 작년에 새 규칙들을 널썩에 이 상쇼 혼이도 군부대신으로 잇서 칙령에 즘기 일흠을 쓴줄노 싱각 혀노라 이세를 당 혀야 외국 외민 혀는 조선 사름들은 아모썩록 밧으고 정다운 말을 혀야 조선이 녀의 나라와 갓치 되기를 힘쓰느거시 맛당 혀거늘 이런 무리혀고 압 뒤가 닷지 못흔 말을 혀는거슨 나라 위 혀는것도 아니요 다만 인심만 쇼동케 혀는거시니 삼가 혀지아니 혀면 세상에 다만 못싱긴 사름 노릇만 혼썩이 아니라 국가에 큰 죄를 짓느걸노 우리는 싱각 혀노라(『독립신문』 제1권 26호 「잡보」란, 1896년 6월 4일)

「국문」은, ‘조선글이요, 선왕이 만든 것으로, 한문보다 백 배 나으며, 게다가 그것이 내 나라에 있으니 그것을 쓰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청국을 섬기고 싶으면 청국에 가서 그 곳의 신하가 되라’고 비아냥거리기까지 하고 있다. 이것을 강명관(1985:214)은 “중세적 가치체계와 사회체계를 고수하려던 보수적 세력과 이로부터 탈출하고자 하는, 「근대」를 추구하는 세력간의 충돌”이라고 해석하고 있는데, 무척 예리한 관찰이다.

3.4 그 후의 신기선과 『독립신문』 간의 논쟁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나, 결과는 알고 있다. 신기선은 이후 “보수세력을 규합하여 대동학회를 조직하여 한문 폐지에 극력 반발하고 나섰”(강명관 1985:215)지만, 「진문」은커녕 「한문」도 결코 부활시키지 못했다.³⁰ 역사의 흐름을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이후에는 사실상 조선에서의 글말은 「진문」의 세계에서 벗어나, 「국문전용」이나 「국한혼용」이나 하는 문제만 남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한문폐지 여부에 비하면, 훨씬 작은 문제이다. 왜냐하면, 이 둘 가운데 어느 입장에 서더라도 그것은, 이미 중세적 글말의 질서인 「진문」의 세계에서 빠져 나와, 단지 사용 문자를 「국문만」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한「문」이 아닌 한「자」를 섞어 쓸 것인지 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갑오개혁 이후 조선어는 중세적 질서에서 벗어나 근대적인 면모를 갖추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되는데, 그 작업이 바로 「국어만들기」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국어만들기」는, 앞에서 보았던 『독립신문』의 논설을 비롯하여 이 봉운의 『국문정리』(1897) 등에서 시작되어, 주시경을 거치면서 본격화하는 듯했으나, 식민지화로 일단 좌절이 되었다. 그러나 식민지화 이후에는 주시경의 제자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조선어학회가 그 역할을 이어 받았다.³¹ 조선어학회와 그 회원들의 활동으로 「국어만들기」의 기초를 이루는, 규범 문법(예컨대 최현배의 『우리말본』, 1937) 및 철자법(『한글 맞춤법 통일안』, 1933), 그리고 표준어(『사정한 조선어 표준말 모음』, 1936) 등은 불완전하나마 어느 정도 틀이 갖추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작업들은, 모두 개인 혹은 민간 단체에 의한 것이었으므로, 실질적인 언어규범이라고 보기는 어려웠다. 게다가 본격적인 사전은 만들어지지도 않은 상태였다. 이러한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해방 전에는 박승빈을 중심으로 한 조선어학연구회의 끊임없는 도발이 있었고, 해방 후에는 이승만 당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미 이루어진 규범화조차 무력화하려는 「한글과동」과 같은 시도도 있었다. 여전히 「국어만들기」는 불안정한 상태였던 것이다.

이러한 여러 가지 점들을 고려하여, 본격적인 「국어만들기」의 1차적 완성인 『큰사전』이 완간된 1957년으로 잡을 수도 있을 것이다. 『큰사전』의 간행

은, 이미 틀이 갖추어져 있던 「철자법」·「문법」과 더불어, 채 규범화되지 못한 상태에 있던 어휘면에서의 규범화를 공식화한 것이자, 동시에 이제 규범화는 어떠한 시도로도 “돌이킬 수 없는 현실”(김하수 1993:144)이 되었음을 내외에 천명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4. 맺는 말

4.1 지금까지 우리는, 갑오개혁을 전후하여, 「언문」이 「국문」으로 승격되어 가는 과정에 대하여 검토해 왔다. 갑오개혁기에 들어서, 우선 공문에서 「진문」 대신에 「국문」이 쓰이게 되었고, 그리고 그 성공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근대적인 교육 제도가 확립됨으로써 「국문」의 사용이 일반화하기 시작했다. 이와 함께 과거제가 폐지됨으로써 중세적 언어(글말) 질서를 유지하는 기둥이었던 「진문」, 곧 한문도 설 곳이 없어졌다. 이에 대하여 당시의 기득권 세력들은 「진문」을 폐지할 수 없다고 맞서 보았지만, 결국은 역부족이었음도 확인하였다.

원칙적으로 근대어란, 그 언어로, 글말의 차원에서는 물론이고 입말의 차원에서도 전국적으로 의사소통이 가능해야 하며, 특히 글말의 차원에서는 그 언어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면을 공적, 사적 영역을 막론하고 포괄할 수 있어야 한다. 그 언어로 법률이 적혀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재판 및 판결문도 그 언어로 이루어져야 하며, 또 그 언어로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그것이 법률적 효력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³² 그리고 학교 교육에서도 교재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교육도 그 언어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제 측면을 고려할 때에, 역시 한국어의 근대화는 갑오개혁을 그 출발점으로 삼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4.2 그러나 이러한 입장에 서게 되면, 앞으로 새로이 밝혀 내지 않으면 안 되는 과제들이 한둘이 아닌데, 이들은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국어만들기」의 과정, 곧 「한국어의 근대화 각론」이 될 것이다. 우선 왜 하필이면 갑오개혁을 전후로 「국문」이란 말이 등장했는지, 나아가 「국어」라는 말은 언제부터 오늘날과 같은 national language라는 뜻으로 쓰이기 시작했는지, 또 그것이 가

지는 의미는 무엇인지 등은, 아직까지 전혀 규명된 바 없다. 이것은 또한 어휘의 근대화वाद 직결되는 바, 근대적 어휘의 탄생 자체가 중세적 고전 한문 세계와의 완전 결별(이연숙 2001)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이것도 깊이 파고 들어야 할 문제의 하나이다. 이와 더불어 한국어의 표준어화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본격적인 연구는 나오지 않고 있다. 문체의 근대화는, 여타의 분야에 비해서 비교적 많은 각광을 받은 분야이긴 하지만, 이 역시 좀더 깊이있는 연구를 기다리고 있다.

【주】

- 1 이 글은 2008년 2월 28일에 연세대학교 근대한국학연구소 주최의 국제 심포지엄 「한일 근대어문학 연구의 쟁점(1)」에서 발표한 내용의 일부를 수정한 것이다.
- 2 JACAR(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Ref.B06150028800(第397像), 日鮮修好條約ノ締結 第二(外務省史料館).
- 3 『고종실록』 13권, 1876년 2월 3일. 조선왕조실록의 홈페이지(<http://sillok.history.go.kr/>)에는 실록의 한국어역과 원문, 그리고 원본의 이미지가 모두 실려 있는데, 이 글에서의 인용도 거기의 것이다(이하에서는 편의상 실록의 권수와 날짜만을 밝히기로 하겠다.). 단, (1나)의 원문 「嗣後兩國往來公文日本用其國文自十年間別具譯漢文一本朝鮮用眞文」 가운데에, 밑줄 친 부분의 번역만은 필자가 임의로 수정을 하였다. 뒤에서 다시 언급하겠지만, 필자는 이른바 한자권의 보편어로서의 「진문」과 외국글의 하나인 「한문」을 구분하여 사용하였다.
- 4 JACAR(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Ref.B06150028800(第397画像), 日鮮修好條約ノ締結 第二(外務省史料館).
- 5 황호덕(2003:136~137)은, (1)과 같은 내용을 인용하면서, “조선은 (중략) 비로소 내이션 체제와 국가 표상으로서의 자국어(를) 접했던 것이고, 「외국어 대 자국어」의 도식과 대면했던 것이다”라고 하고 있다.
- 6 『관보』 1894년 6월 28일. 본고에서 인용한 『관보』는 모두 국립중앙도서관의 홈페이지(<http://www.nl.go.kr/>)에 올라 있는 것들이다. 이하에서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하여, 관보의 발행일(및 호수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호수도 포함)만을 밝히도록 하겠다.
- 7 『고종실록』 33권, 1895년 3월 25일. 주지하는 바이지만, 당시의 문서들은 『독립신문』 이외에는 대부분 띄어쓰기를 하지 않고 있는데, 본고에서는 띄어쓰기를 하였다. 이하에서는 하나하나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독립신문』을 제외한 당시 문헌들의 띄어쓰기는 모두 필자의 것임을 밝혀 둔다.

- 8 그런데 「법률 제1호」로 1895년 3월 25일에 공포된 「재판소구성법」의 제51조(裁判所에는 朝鮮語를 用喜 但 訴訟 關係人 中 朝鮮語에 通치 못흐 者가 有喜 時는 通辯을 用喜을 得喜)와 제52조(外國人이 訴訟 關係人이 되는 時에 當喜야 判事가 其 國語에 通喜거든 其 外國語로써 口述 審訊喜을 得喜 但 訴訟 記錄은 朝鮮語로써 作喜이 可喜)(이상 『고종실록』 33권, 1895년 3월 25일)에는 「국어」가 아닌 「조선어」가 쓰이고 있다. 그리고 이보다 2년 뒤인 1897년에 간행된 Gale의 『韓英字典』(초판)에는 「국어」라는 말이 표제어로 등록되어 있지 않다(1911년에 간행된 제2판에는 「국어」가 “The national tongue, the language of a country”라는 주석과 함께 실려 있다). 이로 미루어 당시의 「국어」라는 말은 오늘날과 같은 national language라는 뜻보다는 글자 그대로 「나라의 말」 정도의 의미로 쓰였을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
- 9 이 글에서는 <http://www.hangeulmuseum.org>에 올라 있는 것을 이용하였다. 이하 같음.
- 10 송철의(2005:61)에도 이 사실이 지적되어 있는데, 그에 따르면, 이것은 칙령 제13호로 1894년 12월 10일에 반포되었다고 한다. 그럼에도 왜 『관보』에는 날짜가 하루 늦은 12월 11일로 되어 있는지는 알 수 없다. 송철의(2005:61, 각주 22)도 자세한 내막은 알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 11 『관보』 1894년 12월 12일. 그리고 최초의 헌법이라고 말해지고 있는 「홍범14조」가 이 「서고문」의 후반부를 차지하고 있는데, 당연히 「홍범14조」도 순한문체, 순국문체, 국한혼용체의 셋으로 되어 있다.
- 12 『관보』 1894년 12월 13일. 그런데 이것은 「한문체, 국한문혼용체, 순국문체」의 순으로 되어 있다.
- 13 『고종실록』 33권, 1895년 3월 25일. 다만, 1894년 7월 14일에 제정된 「행정경찰장정(行政警察章程)」의 제5절 「순검선용장정(巡檢選用章程)」의 3항에는 “순검을 시험치는 방법은 반드시 형법, 소송법, 경무법 개요와 국한문 문서를 주고받는 규정을 통달”(『고종실록』 32권, 1894년 7월 12일)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문」이 아닌 국한문이 들어가 있는 점이 이채롭다. 그리고 이 내용은 다시 「내부령 제7호」로 공포된 「순검채용규칙」의 제4조 “巡檢 技藝의 試驗은 左開와 如喜” 및 그 각론 “本國 地理의 大畧을 通喜는 者”, “國漢文으로 論文을 作喜기 得喜는 者”(『관보』 132호, 1895년 8월 8일)로 이어진다. 아마도 이것은 대민업무(그 직무로는 「①백성들에게 방해되는 일을 방지하고 보호하는 일, ②건강을 보호하는 일, ③방탕하고 음란한 짓을 금지하는 일, ④국법을 위반하려는 사람을 은밀히 수색 체포하는 일」의 네 가지가 규정되어 있었다[이상 『고종실록』 32권, 1894년 7월 14일])가 주였던 순검의 경우, 한문보다는 「국문」이나 국한문에 대한 지식이 더 요구되었기 때문이 아니었나 추정된다.
- 14 이 밖에 「칙령 180호」로 1895년 11월 7일에 공포된 「종두의양성소규정」(『관보』 208호, 1895년 11월 9일)에도 그 입학시험 과목의 하나로 「한문 작문, 사자

- (寫字)」와 함께 「국문 작문」이 들어 있었다.
- 15 이하에서 인용하는 『국문소학독본』은 모두 <http://www.hangeulmuseum.org/>에 올라 있는 것이다.
- 16 <http://www.hangeulmuseum.org/>에서 그 원문을 볼 수 있는데, 이 글에서의 인용도 거기의 것이다.
- 17 『소학만국지』는 앞에서 「총론」을 서술한 다음에 「아세아주」의 16국에 대한 기술로 이어지고 있는데, 그 처음은 물론 「조선」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고 “本國은 別도 地誌가 有하되 此에 揭錄을 省하니라”라고 되어 있다.
- 18 다만, 이 내용은 칙령이나 학부령 등으로 공포된 것이 아니라, 『관보』의 「회보」란에 「관청사항」으로 올라 있다. 이기문(1970:19~20)도, 이 부분을 인용하면서, “1908년까지도 관용문에 상당한 혼란이 있었음을 엿볼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 19 철자법(綴字法), 문법(文法), 사전(辭典)의 세 단어 모두(초창기의 文典이라는 말도 포함하여)에 규범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法, 典」이라는 글자가 쓰이고 있음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 20 「국문연구소」가 설치되어 “문자체계와 정서법의 확립”(이기문 1970:116)에 힘을 쏟게 된 것은 1907년에 이르러서였다. 그러나 「국문연구소」의 보고서는 공포가 되지 못한 채 조선은 식민지로 전락하고 만다.
- 21 이러한 우리의 논의가 문학사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은 우연이 아닐 것이다. 예컨대 김영민(2001:51)에 의하면, 한국 근대소설사의 출발점은 1890년대로 볼 수 있는 바, 그 이유는 “이 시기에 단형 서사문학 작품들이 적지 않게 출현했”는데, 이 “작품들은 앞 시기에 비해 현실성을 띠고 있으며, 근대적 문체로 쓰여졌고, 신문이나 잡지 등 근대적 매체를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들 수 있다고 한다.
- 22 『독립신문』의 글들에는 「님군, 군주」 등의 표현이 나오면 대부분 줄이 바뀌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줄바꿈은 인용에 반영하지 않았다. 그리고 고유명사에 옆줄을 치고 있는 것도 인용에서는 무시하였다. 이하 같음.
- 23 이상은 『독립신문』 제1권 제1호(1896년 4월 7일)에서의 인용이다.
- 24 이상의 주시경의 발언은 모두 『독립신문』 제2권 47호(1897년 4월 22일)에서의 인용이다.
- 25 예컨대 『독립신문』 제2권 114호(1897년 9월 25일)에 실린 「국문론」의 “…… 불가불 국문으로 옥편을 든드러라 흘지라 옥편을 든드르면 각칙 말의 글즈들을 다 모으고 글즈들 마다 뜻들도 다 자세히 널연니와 불가불 글즈들의 음을 분명 하게 표 하야야 흘터인디……”와 같은 부분을 들 수 있다.
- 26 이하의 이 절에서의 논의는 강명관(1985)를 주로 참조한 것이다.
- 27 강명관(1985:212)에서 재인용.
- 28 강명관(1985:213)에서 재인용.
- 29 이상은 『독립신문』 제1권 26호(1896년 6월 4일)의 「잡보」란의 것이다.
- 30 이 이후의 국한문논쟁 전반에 대해서는 강명관(1985:215~247)에서 상세하게

- 다루고 있으므로, 자세한 것은 그 글을 참조하기 바란다.
- 31 그 이전의 총독부에 의한 조선어 규범화 정책에 대해서는 미쓰이[三ツ井](2002)를 비롯한 일련의 그의 작업을 참조할 수 있다.
- 32 안병희(1985:806~807)에 의하면, 17~18세기 전반까지만 하더라도 언문으로 적혀진 문서는, 정당한 문서로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채권도 인정되지 않았다고 한다. 즉, 한글로 적힌 문서의 경우 법률적 효력이 없었다는 것이다.

< 참고 문헌 >

- Gale, J.C.(1897), 韓英字典, Yokohama: Kelly&Walsh.
- Gale, J.C.(1911), 韓英字典, Yokohama: The Fukuin Printing Co., L't.
- 강명관(1985), “한자폐지론과 애국계몽기의 국한문논쟁”, 한국한문학연구 8, 한국한문학회, 195~252.
- 고종실록(<http://sillok.history.go.kr/>)
- 관보(<http://www.nl.go.kr/>)
- 국민소학독본(<http://www.hangeulmuseum.org/>)
- 김민수(1986), 주시경 연구, 탐출판사(증보판).
- 김영민(2001), “1920년대 소설의 근대적 특성 연구”, 현대문학이론연구 15, 현대문학이론학회, 51~78.
- 김영민(2005), 한국 근대소설의 형성 과정, 소명.
- 김하수(1993), “언어정책론”, 외솔 최현배 선생의 학문과 인간, 국립국어연구원, 133~146.
- 독립신문 제1권(1896), 독립신문영인간행위원회.
- 독립신문 제2권(1897), 독립신문영인간행위원회.
- 박종근(1985), “갑오개혁과 김홍집 정권”, 양상현 편(1985:249~306).
- 소학만국지지(<http://www.hangeulmuseum.org/>)
- 송철의(2005), “한국 근대 초기의 어문운동과 어문정책”, 이병근 외(2005:35~75).
- 안병희(1985), “훈민정음 사용에 관한 역사적 연구”, 동방학지 46-48,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793~821.
- 양상현 편(1985), 한국근대정치사연구, 사계절.
- 이기문(1970), 개화기의 국문연구, 일조각.
- 이병근(2000), 한국어 사전의 역사와 방향, 태학사.
- 이병근 외(2005), 한국 근대 초기의 언어와 문학, 서울대학교 출판부.
- 이연숙(2001), “번역과 근대국어의 탄생”, 교수신문 2001년 4월 2일.
- 이연숙 지음/고영진·임경화 옮김(2006), 국어라는 사상, 소명.
- 이용호(1975), 개화기의 한글운동사, 성철사.

- 전용호(2005), “근대 지식 개념의 형상과 『국민소학독본』”, *우리어문연구* 25, 우리어문학회, 243~264.
- 정구선(1993), “갑오개혁기 관리임용제도 개혁에 관한 일 고찰~과거제 폐지 및 천거제 수용을 중심으로”, *경주사학* 12, 경주사학회, 57~82.
- 정승철(2005), “근대국어학과 주시경”, *이병근 외(2005:77~138)*.
- 조선어학회(1936), *사정한 조선어 표준말 모음*, 조선어학회.
- 조선지지(<http://www.hangeulmuseum.org/>)
- 최현배(1937/1979), *우리말본*, 연희전문학교출판부(역대한국문법대계 제1부 제18책, 탐출판사).
- 한글학회 편(1980), *한글 맞춤법 통일안(1933~1980)*, 한글학회.
- 한우근(1970), *한국통사*, 을유문화사.
- 황호덕(2003), “근대 네이션과 그 재현 양식들-박영효 『使話記略』의 구어 상황과 국가 표상”, *한국사상과 문학* 19, 한국사상문화학회, 133~164.
- イ・ヨンスク(1987), 「朝鮮における言語的近代」, *一橋研究*第12卷第2號, 81~95.
- イ・ヨンスク(2001), 「文字から文体へ-漢字と言語的近代」, 山中桂一・石田英敬編(2001:175~194).
- 邢鎮義(2006), 「近代日本の言語近代化と口語文法(1)」, *일본문화학보* 31권 1호, 한국일본문화학회, 89~105.
- 三ツ井崇(2002), *植民地下朝鮮における言語支配の構造-朝鮮語規範化問題を中心に*, 博士(社会学)学位論文, 一橋大学大学院社会学研究科.
- 山中桂一・石田英敬編(2001), *言語態の問い*, 東京大出版.
- Ferguson, Ch.(1959/1964), *Diglossia*, Hymes, D.(ed)(1964:429~439).
- Fishman, J.(ed)(1974), *Advances in Language Planning*, Mouton.
- Hymes, D.(ed)(1964), *Language in Culture and Society*, Harper&Row.

朝鮮語の「近代化」研究序説—「諺文」から「国文」へ—

コ・ヨンジン

朝鮮語の「近代化」について論じられる際、甲午改革前後に「諺文」が「国文」としての地位を得たことがしばしば言及される。本稿はこの地位の変化が朝鮮の言語生活における近代的転換の契機となったことについて跡付けよ

うとするものである。このためには、そもそも言語の近代化とは何かをまず定義する必要があるが、それは「話しことばに基づいた書きことばの創出（＝規範化）およびその到達点としての民族語（国民語）の形成過程」（三ツ井崇）と言える。

原則的に近代語とは、その言語で、書き言葉はもちろん、話し言葉においても全国的にコミュニケーションが可能であり、とくに書き言葉の次元ではその言語で政治・経済・社会・文化のすべての側面を、公的・私的次元を問わず、包括できなければならない。その言語で法律が書かれており、裁判および判決文もその言語で行われなければならない。それにとどまらず、その言語で契約書の作成ができ、かつそれが法律的に効力を持っていないなければならない。学校教育においても、教材はもちろん、教育もその言語で行われなければならないのである。

このような観点から筆者は、甲午改革期に入り、公文書で「真文」の代わりに「国文」が使われるようになった点、そして、その成功の度合いは別としても、近代的な教育制度の確立により「国文」の使用が一般化され始めた点に注目すべきだと考える。それは科挙制の廃止によって中世的言語（書き言葉）の秩序を維持する要であった「真文」、すなわち漢文もその居場所を失ってしまったことと表裏一体であり、当時の既得権層は「真文」の廃止に抵抗したが、結局は及ばなかった。

このような諸側面を考慮する時、やはり朝鮮語の近代化は甲午改革をその出発点にするしかないと筆者は考えるのである。

For the Study of the Modernization of the Korean Language

KO, Young-jin

Keywords: Modernization of Korean Language, Diglossia, National Character,
Abolition of Classical Chinese Writing